

인천지방법원 2021. 7. 1 선고 2021가단174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 고 1. A

2. B

피 고 C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1. 7. 1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9. 6. 17. 접수 제3815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(무변론 판결)

판사 김태환

별지